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83호 2018. 10. 25.(목)

## 조 례

- 사천시 조례 제1516호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2
- 사천시 조례 제1517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4
- 사천시 조례 제1518호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# 사 천 시 공 보

제583호

사천시 조례 제1516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10월 25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##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사무관리규정」 제41조” 를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” 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 중 “이하 “사무국장” ” 을 “이하 “사무국장” 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제1호 서식” 를 “제1호서식” 로 하고, “「사무관리규정」 ” 을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” 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게시공고하여야” 를 “게시 공고하여야” 로 하고,

# 사 천 시 공 보

제 583 호

“전자이미지 공인” 을 “전자이미지공인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담당주사가” 를 “담당 팀장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정사용하지” 를 “부정 사용하지” 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사무관리규정」 및 「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」” 을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및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583호

사천시 조례 제1517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10월 25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” 를 “제62조에 따라 사천시의회” 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회” 를 “사천시 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산업건설위원회” 를 “건설항공위원회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상하수도사업소” 를 “하수도사업소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583호

사천시 조례 제1518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10월 25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의정담당주사로” 를 “의정팀장으로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